## KOSHA GUIDE

C - 96 - 2014

(6) 도급인이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서만으로는 가설구조물의 설계조건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도급인에게 가설구조물의 설계조건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 회신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때에는 도급인이 회신한 설계조건이 설계변경 근거가 된다.

## 5.2 재해발생 위험의 사전검토

- (1) 수급인은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한 때에는 즉시 전체공정에 대하여 설계서 와 현장조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서(구조계산서 포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불일치되는 사항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수급인은 각 공종별 그의 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도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해당공사에 대하여 설계서의 검토 및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수급인은 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로 하여금 단위작업에 대한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게 하고 단위작업 전 과정에 있어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게 하고 위험요인이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5) 상기 (1) ~ (4)의 과정에서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불일치하거나 설계서 상호간에 불일치되는 사항이 있거나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계약조건 이외의 사항인 경우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도급인의 판단을 구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6.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 6.1 설계변경 사유 및 위험성의 판단

(1)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하여야 한다.